

— '96年度 —
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

光州廣域市西區議會

이 報告書案은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16條의 規程에 의하여 各 常任委員會에서 實施한 區廳 및 議會事務局 業務 全般에 對한 1996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를 第61回 光州廣域市 西區議會 定期會 會期中 各 常任委員會에서 採擇하여 第4次 本會議('96. 12. 21)에서 議決한 事項임.

監査結果是正 및 處理要求 件數

總 98 件

- 運營委員會 11 件
- 企劃總務委員會 43 件
- 社會都市委員會 44 件

— 目 次 —

1. 議會運營委員會 所管

2. 企劃總務委員會 所管

3. 社會都市委員會 所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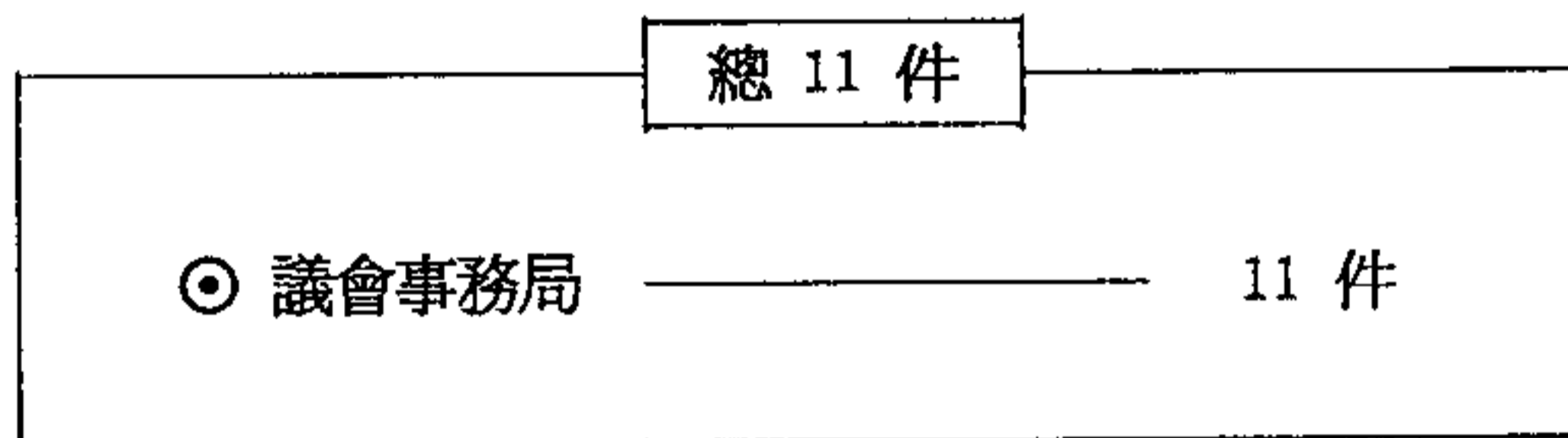
— 1996 年度 —

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案)

議 會 運 營 委 員 會

이 報告書(案)는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議會運營委員會가 實施한 議會事務局 所管 業務에 對한 1996年度 行政事務監查 結果를 第61回 光州廣域市 西區議會(定期會) 第1次 運營委員會('96. 12. 13) 에서 採擇한 것임.

監查結果 是正 및 處理要求 件數



1996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案)

1. 監査의 目的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光州廣域市 西區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關한 條例의 規定에 依하여 議會事務局 所管에 對한 全般的인 行政事務監査를 實施하므로써 議會事務局의 實態를 正確히 把握하여 地方自治 立法活動에 反映하고 1997年度 豫算審査를 위한 資料 및 行政情報를 獲得함을 目的으로 함.

2. 監査期間

1996年 11月 27日 (水)] 7日間
1996年 12月 3日 (火)]

3. 監査 對象部署 : 議會事務局

4. 監査班의 編成

가. 方針 : 委員會 所屬 委員 全員이 監査實施

나. 監査委員 : 8 名

◦ 委員長 : 李正朱 議員

◦ 幹 事 : 姜熙烈 議員

◦ 委 員 : 鄭燦景 議員, 朴鍾玉 議員, 金相集 議員, 金東植 議員,

金月出 議員, 金永俊 議員

다. 事務補助者 : 3 名

◦ 專門委員 : 徐大錫

◦ 職 員 : 徐相俊

◦ 速記士 : 金恩京

- 4 -

5. 監査 日程 및 場所 : '96. 12. 3 (火) 11:00 議會 小會議室

6. 主要 監査 實施內容

- 議會事務局 備置帳簿 및 臺帳 記錄維持 管理狀態
- '96年度 議會運營 豫算 執行事項
- 議會 物品管理 및 臺帳 整理狀態
- 議會事務局 文書 保存管理 實態
- 放送室 運營 管理事項
- 議會事務局 職員 配置事項
- 陳情書 處理事項
- 議會消息紙 發刊에 관한 事項
- 議政活動에 必要한 資料 備置事項
- 其他 業務全般에 관한 事項

7. 行政事務監査 結果 是正 및 處理 要求事項

부 서 명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비 고
의회사무국	<p>1.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가 미비하므로 자료를 구입 비치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p> <p>○ 비치자료 요구 목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도 - 도시계획도 - 법률연혁집 - 법령해설집 - 판례집 - 훈령, 지침 -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 - 타 시도·시군구 조례집 등 <p>2. 의원들의 의정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의정활동 기록사진이 미흡한 편으로 의원들의 애로가 많은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의원보좌업무 수행에 차질없도록 조치요구</p> <p>3. 사무국 직원들의 배치 문제에 대한 방안</p> <p>○ 일반직은 순환교류되고 있으나 기능직 직원은 순환근무가 되지 않고 있어 업무에 대한 창의성과 책임성이 결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p>	

- 6 -

부 서 명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비 고
의회사무국	<p>○ 속기사 업무를 속기 뿐만아니라 워드까지 작성하여 워드 작성 잉여인력을 다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p> <p>○ 일용직 여직원도 자체 순환근무하여 조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p> <p>4. 사무국 직원 사기양양 대책 강구</p> <p>○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사무국 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여 별도기관에 소속되어 의원들의 의정 활동 보좌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집행부 공무원에 비하여 인사, 근무평정, 포상등 각종 혜택에 소외를 받고 있어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을 세워 사무국 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p> <p>5. 서구청 인사위원회에 집행부 국장들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의회사무국장은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 데 집행부측에 촉구하여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개선 요구</p> <p>6. 매분기 1일자로 발행되고 있는 의회소식지를 25일자로 발행하여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 때 반회보와 의회</p>	

부 서 명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비 고
의회사무국	<p>소식지를 함께 배부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p> <p>7. 각 상임위원회에서 동시에 회의가 진행되고 있을 시 각실에서 모니터로 방송실에서 송출한 회의장면을 1개 위원회 회의장면만 시청할 수 있어 민원인 및 관계공무원들이 원하는 회의 장면을 볼 수 없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방송 시스템을 다원화하여 시청자가 직접 TV 모니터에서 채널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 시행하기 바람.</p> <p>8.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보존년한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모든 공문서는 계획과 실적이 연결되어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시정 요구</p> <p>9. 의원들이 주간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의정 연구활동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실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p> <p>10. 의회사무국 280일 일용여직원 2명을 300일로 상향조정하여 근무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p> <p>11. 진정서가 의회에 접수되면 지역구 의원 뿐만아니라 전체 의원이 알 수 있도록 진정서 내용의 자료를 배포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p>	

1996年度

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

企劃總務委員會

이 報告書는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16條의 規程에 의하여 企劃總務委員會가 實施한 西區廳 企劃監查室·文化弘報室·區政發展擔當官·總務局·保健所 所管 業務에 對한 1996年度 行政事務監查結果를 第61回 光州廣域市 西區議會(定期會) 第1次 企劃總務委員會('96. 12. 3)에서 採擇 한 것임.

監查結果是正 및 處理要求 件數

總 43 件	
◎ 企劃監查室	8 件
◎ 文化弘報室	4 件
◎ 區政發展擔當官	6 件
◎ 總 務 局	20 件
• 總 務 課	5 件
• 會 計 課	7 件
• 地 方 稅 課	3 件
• 區 民 課	1 件
• 民防衛災難管理課	4 件
◎ 保 健 所	5 件

'96年度 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

1. 監查의 目的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光州廣域市 西區議會 行政事務監查 및 調査에 關한 條例에 의하여 企劃總務委員會 所管에 對한 全般的인 行政事務監查를 實施 하므로써 區政의 運營實態를 把握하여 地方自治 立法活動에 反映하고 1997年度 豫算審議를 爲한 必要한 資料 및 行政情報를 獲得함을 目的으로 함

2. 監查期間

1996年 11月 27日 (水) } 7日間
1996年 12月 3日 (火) }

3. 監查實施對象機關

委員會選定對象機關	本會議承認對象機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企 劃 監 查 室 ○ 文 化 弘 報 室 ○ 區 政 發 展 擔 當 官 ○ 總 務 局 ○ 保 健 所 	

4. 監查委員會 編成

別添의 監查班을 編成하지않고 委員會 委員 全員이 監查를 實施하였음

◆ 監查委員

區 分	監查委員	區 分	監查委員	補 助 職 員	備 考
委員長	張 憲 一	委 員	朴 英 洙	專門委員 朴 鍾 根	
幹 事	朴 鍾 玉	"	鄭 燦 景	職 員 盧 良 在	
委 員	千 熙 澈	"	朴 夏 俊	速 記 士 朴 尙 姬	
"	李 正 朱	"	李 春 雯		
"	姜 熙 烈	計	9人	3人	

5. 監查日程 及 場所

日 時	監 查 對 象 部 署	監 查 場 所	備 考
'96.11.27. 10:00 (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企 劃 監 查 室 ・ 文 化 弘 報 室 	企劃總務委員會 會 議 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人 事 及 幹 部 紹 介 ・ 現 況 報 告 ・ 出 席 公 務 員
'96.11.28. 10:00 (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區 政 發 展 擔 當 官 ・ 總 務 課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總 務 局 長 ・ 保 健 所 長 ・ 企 劃 監 查 室 長
'96.11.29. 10:00 (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會 計 課 ・ 地 方 稅 課 ・ 區 民 課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文 化 弘 報 室 長 ・ 區 政 發 展 擔 當 官 ・ 總 務 課 長
'96.11.30. 10:00 (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 防 衛 災 難 管 理 課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會 計 課 長 ・ 地 方 稅 課 長 ・ 區 民 課 長 ・ 民 防 衛 災 難 管 理 課 長
'96.12. 1. (日)	< 休 會 >		
'96.12. 2. 10:00 (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保 健 所 ・ 補 充 監 查 (該當室・擔當官・課・所)	企劃總務委員會 會 議 室	
'96.12. 3. 14:00 (火)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監 查 結 果 報 告 書 作 成 及 委 員 會 議 決	"	

6. 主要監査實施 内容

該當室課	主 要 監 査 實 施 内 容	備 考
企劃監査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에 따른 예산관리 문제점 ○ 각종위원회 운영실적 미흡 ○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문제점(예산운영) ○ 지방채 사용절차 및 사업에 관한 문제점 ○ 동행정감사 결과 위법사항 증가에 따른 사항 ○ 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문제점 ○ 변호사 선임료 과다지급에 관하여 ○ 내실있는 발간실 운영 요구 	
文化弘報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수주자 선정시 강제성 부여 금지 ○ 체육시설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문제점 ○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철저 (청소년 놀이문화 대책 수립) ○ 새마을 이동문고 이용실적 미흡에 따른 대책 강구 	
區政發展 擔當官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감사실과 구정발전담당관 업무의 중복성 ○ 무계획적인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 ○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의 문제점(빈번한 조직개편의 문제점) ○ 버스승차권 자동판매기 관리 철저 ○ 형식적인 경영수익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문제점 ○ 전산장비 관리철저 	
總務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 휴양소 이용실적 미흡에 따른 문제점 ○ 동절기 동 야간근무 시간 조정 요구 ○ 각종 행사시 강제적인 인원동원 배제 	

該當室課	主要監査實施內容	備考
總務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28조 규정 위배사항에 따른 문제점(인사관리 철저) ○ 문서발생량 증가에 따른 문제점 	
會計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 관리계획 업무소홀 ○ 지방재정법 제27조 규정 위배사항 ○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 및 무단점용자 조사철저 ○ 수익계약 체결에 따른 위원회 구성 요구 ○ 각종 공사시 지도감독 철저 ○ 물품구입시 주무부서와 협조 체계 유지 철저 ○ 동청사 신축시 준공검사 철저 	
地方稅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채권 확보 철저 ○ 체납자 재산압류후 조치 미흡 ○ 지방세 과오납 발생에 따른 문제점 	
區民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실 입구 민원인 안내 직원 배치요구 	
民防循災難 管理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급수시설 관리 철저 ○ 재난사고 예방 업무 철저 ○ 형식적인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배제 ○ 밀집지역 화재예방 훈련실시 	
保健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업무 통계자료 미흡 ○ 한약도매상의 소매행위 금지 ○ 방역업무 추진에 따른 문제점 ○ 의약업소 지도단속 업무철저 ○ 부정 의약업자 무허가 단속에 따른 조치 	

7. 監査結果是正 및 處理要求事項

該當室.課	是正 및 處理要求事項
企劃監査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은 국비 6천만원 시비 3억2천만원으로 모두 3억8천만원인데 시비사업중 비교적 반환금이 큰 특별사업은 행정비 16백만원, 고용촉진직업훈련비 19백만원, 치평동 죽동마을 도로개설 17백만원, 서창입구-서창교간 제방도로개설 11백만원, 중앙어린이집 건립 106백만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는바 여기에서 중앙어린이집 건립비 반환금 1억6백만원 반환은 가장 대표적인 예산 부실관리라고 생각한다. 중앙어린이집은 94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중앙에서 건축비로 5억원을(부지는 자체확보)받아 왔는데 관계규정을 보면 사업종료후 집행잔액이 5천만원미만이면 반납하지 않으며, 집행잔액이 5천만원이상일때는 용도및 사업변경을 승인받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전적인 재량권을 주고 있는데도 이런 교부세 재원을 자치구에서 활용치않고 1억6백만원이나 반환하려고 하는 것은 경영행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대안을 강구하기 바람 ○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위원회수가 35개이나 96년도에 행정정보공개위원회외 9개 위원회가 회의를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 관리가 되고 있으며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 지방보육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등이 개최되지 않고 있는 것은 민선 자치시대에 있어서 주민을 위한 행정에 모순으로 판단된 바 시정 바람.

該當室課	是正 및 處理 要求 事項
企劃監査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은 사실상 자치구 재원 조달 능력으로는 5년간(1995년 ~ 2000년) 재정을 전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데에 공감이나 내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96.11.30. 본계획을 심의위원회에 부의한다면 실제 예산편성과 중기재정 계획과는 괴리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연 계획대로 재정이 운영될 것인가에 의구심이 많음. <p>단적인 예로 일반회계 세입증가율에 있어서 98년도까지는 각각 7.1%, 12.1%로 증가하고 있으나 99년 10.8%, 2000년도 9.8%로 증가율 감소로 전망하고 계획을 수립함은 우리구가 앞으로 상무 신도심, 풍암지구, 금호 제2차 지구등 발전과 잠재 가능성을 예측할때 재정규모가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도 본 계획은 이러한 성장요인을 전혀 고려치 않은 계획이라 볼 수 있으므로 시정바람.</p> ○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채무현황중 채무부담이 30억원을 제외한 지방채는 모두 43억3천6백만원으로 이중 가장 최초의 하수도시설 20개소 11억4천4백원의 지방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절차는 내무부장관이 승인한 범위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하게 절차를 준수하기 바라며, 하수도 시설은 시비보조금을 받아 시행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대책을 강구하기바람 ○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 행정감사의 위법사항 건수가 줄어 들어야 함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該當室課	是正 및 處理 要求 事項
企劃監査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해외연수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환경, 사회 복지, 청소행정분야 등은 사전에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여 사전 타당성을 조사 확인한 후 연수를 실시해야 함에도 이번 96년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한 일본 쓰레기매립장 시설 견학은 후쿠오카 쓰레기매립장이 해안가에 시설되어 있는 등 우리 서구 실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도 연수 장소로 선정하였던 것은 사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됨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변호사 선임료 지급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의하면 소송 물가액 기준이 1,000만원 부터 2,000만원까지는 착수금이 4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방림동 57-23외 1도로 65㎡에 대하여 91.3.7 ~ 95.2.28 까지 부당이득금 11,838,550원 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구청 변호사 선임료를 150만원을 지급했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착오 지급액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 구청 자체 발간실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외주발간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낭비이므로 검토바라며, 현재 자판기 2대중 1대와 복사기 1대가 마모되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체가 요구되고 발간실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 1명을 남직원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該當室課	是正 및 處理要求事項
文化弘報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보 발행시 지면에 광고를 게재해 주고 업소로부터 광고료를 징구하고 있는데 광고업체 선정시 광고수수자가 없다고하여 강제성을 가지고 광고수수자를 선정하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람. ○ 체육시설 지도단속에 있어서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있는 178개 업소를 문화체육계 직원3명으로 지도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지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심야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철저히하여 건전한 생활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상무2동 청소년 어울마당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타동으로 확산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새마을 이동문고 이용실적을 보면 문고가 1일평균 10명에 19권, 이동문고 차량이 1일평균 12명에 25권으로 극히 저조하다고 확인된바 많은 구민과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區政發展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과 구정주요 업무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구정 개발에 관한 연구 및 운영등 구정전반에 걸친 기획조정 업무로 구정발전담당관의 정책개발계 및 경영행정계 업무와 중복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구정발전담당관실을 전산통계실로 조정

該當室課	是正 및 處理要求事項
區政發展 擔當官室	<p>하고 정책개발 및 경영행정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바람.</p> <p>○ 전평제 낚시공원 개발과 관련하여 96년도 본예산에 2억 9천9백5십만원을 요청했다가 예산심의시 1억원만 계상된 줄 알고 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년이 다된 지금도 “전반적인 사항은 충분히 검토후 사업계획 수립 추진”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사업계획이 충분히 검토되고 난 후에 예산에 반영해야 됨에도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예산만 반영해 놓았다가 1년이 다된 지금까지도 검토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전평제 낚시공원의 경우 낚시공원으로 개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견해이다. 이처럼 경영수익 사업을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구정발전담당관의 업무행정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p> <p>○ 당초 조직개편시 지역발전 자문위원회나 다른 연구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사전에 철저한 조직진단을 통해 최소의 인원으로 효과를 극대화 하여야 되는데 2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의 내용을 보면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소관계를 옮기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조직이 방만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올해 전남대 기업경영 연구소에 용역을 준 행정 경영화 전략</p>

該當室課	是正 및 處理 要求 事項
區政發展 區政發展 區政發展	<p>연구 과제는 결국 결과에 따라서 조직 개편이 필수라고 보는데 이렇게 빈번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오히려 행정능률의 효과가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검토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승차권 자동판매기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설치 하였으나 아직까지 광고 수주자가 선정되지 않는 등 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면이 있으므로 노력바람. ○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현황을 보면 총17건에 4,508백만원으로 자료를 보고하였으나 내용중 호적과태료, 지적과태료 국공유지임대료, 관급봉투판매수입, 서구소식유료광고 등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평상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을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수익사업의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시정바람. ○ 전산장비 사용 미숙으로 전산장비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유지 보수에 따른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산장비 사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總務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 휴양소 설치후 이용실적이 96년도에 65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매우 저조하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현재 위치가 해안가이므로 하절기에만 이용이 가능하고 광주에서 휴양소까지 원거리이며, 인근 해수욕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 대부분 직원들이 휴양소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휴양소 시설에 따른 예산은 날로 증가될 전망이다. 이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조금

該當室.課	是正 및 處理 要求 事項
總務課	<p>하계 휴양소를 시설했기 때문에 판단된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무인기계경비시스템 운영으로 인하여 동사무소 당직 공무원이 야간에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특히 여직원인 경우 동절기에는 혼자 사무실에 늦게까지 근무하려면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간 조정을 요구함. ○ 각종 행사시 동으로 인원동원 계획을 시달하여 무리하게 동원하도록 하고 있어 민선시대에 가장 주민과 밀접한 동행정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인원동원 결과를 평가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지양하기 바람. ○ 96년도에 전보가 제한된 직원 15명을 구청으로 인사 배치한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28조에 위배된 사항이므로 시정바람. ○ 일선 동의 문서발생량을 보면 95년도 3,600건 96년도에 3,78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 및 FAX를 사용하는 등 문서를 감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會計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려면 전년도 12월31일까지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함에도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該當室課	是正 및 處理 要求 事項
會計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행정재산)을무상으로 임대할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현재 서구청내의 민주평통서구협의회 사무실 15명과 서구갑 선거관리위원회 대지 50평은 무상으로 임대하여주고 있으면서도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 됨으로 조치바람. ○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실적이 저조하므로 체납자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징수실적을 거양하고 무단점용자에 대하여는 사전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누락없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바람. ○ 공사계약시 5,000만원이상은 경쟁입찰에 의하고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에 의거 입찰을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지 않도록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의결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부실공사 경험이 있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사유를 알아본바, 하자보수시 문제가 있어 어쩔수 없이 연속성의 공사를 해야하는 입장 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동감이 가나 부실공사는 곧 주민들 에게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물품구입시 회계과 일방적으로 물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하고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주무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바람.

該當室課	是 正 및 處 理 要 求 事 項
會 計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청사 신축후 각종 부실공사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동청사는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재산이므로 준공검사시 철저를 기하기 바람.
地 方 稅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28조에 의하면 체납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재산압류 등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산의 채권 확보를 대만이하어 손실을 가져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바람. ○ 과년도 체납액중 압류만 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96. 10. 31일현재 과오납 환부액이 929건에 747백만원인데 이와 같은 행정 착오로 인하여 납세자와의 갈등으로 관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區 民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구청 민원실 정문에 안내원을 배치하여 구청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친절을 베풀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民防衛災難 管 理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서구관내 비상급수시설수가 29개소이고 음료수 가능 지역이 11개소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중 음료수 가능 지역에 수질검사 내용의 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조치바람.

該當室課	是正 및 處理 要求 事項
<p>民防衛災難 管 理 課</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사고 예방은 주민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도 96년도에 안전대책 실무협의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것은 재난사고 예방 행정에 대한 모순으로 판단됨바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시 대리 출석하여 소집에 응하는 등 형식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자체 점검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소집훈련이 되도록 업무추진하기 바람. ○ 서부코아 및 양동복개상가 등은 밀집지역으로 화재발생시 대형사고위험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가상 시나리오 및 전단 등을 작성하여 비상훈련등 예방행정에 철저를 기하기바람.
<p>保 健 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현황을 보면 주요업무 목표 및 실적이 누락되어 있고 통계가 불일치하는 등 신뢰성을 잃고 있으므로 정확한 통계가 관리되도록 유념하기 바람. ○ 도매상은 약품제조를 할수 없는데도 서구관내 일부 한약업소 도매상들이 무자격으로 한약을 제조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지도단속을 철저히하여 도매업소의 소매행위가 성행하지 않도록 조치바람. ○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소독이 하절기에만 실시하고 있어 가을철 및 겨울철에도 모기가 서식하는등 전염병 예방업무에 미흡하다고 판단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該當室.課	是正 및 處理 要求 事項
保 健 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구관내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 및 제조행위를 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의약품소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보건 향상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철저한 지도단속하기 바람. ○ 부정의약품자 무허가 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을 보면, 장성강 정형외과외 10개 의원이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어 시설 부적합으로 판명되어 시정조치를 받은 후 재검사를 하여 4개 의원만 합격판정을 받고 나머지 의원은 현재 재 검사 추진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빠른 시일내에 완벽한 조치가 되도록 하기 바람.

1996年度

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

社會都市委員會

이 報告書案은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16條의 規程에 의하여 社會都市委員會가 實施한 社會産業局 都市局 所管 業務에 對한 1996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를 第61回 光州廣域市 西區議會(定期會) 第1次 社會都市委員會('96. 12. 3) 에서 採擇한 것임.

監査結果是正 및 處理要求 件數

總 44 件	
◎ 社會産業局	29 件
• 社會福祉課	4 件
• 家庭福祉課	5 件
• 環境保護課	4 件
• 清掃行政課	6 件
• 衛生課	4 件
• 地域經濟課	6 件
◎ 都市局	15 件
• 地域交通課	3 件
• 建設課	6 件
• 建築課	3 件
• 地籍課	3 件

'96年度 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

1. 監查의 目的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光州廣域市 西區議會 行政事務監查 및 調査에 關한 條例에 의하여 社會都市委員會 所管에 對한 全般的인 行政事務監查를 實施 하므로써 區政의 運營實態를 把握하여 地方自治 立法活動에 反映하고 1997年度 豫算審議를 爲한 必要한 資料 및 行政情報를 獲得함을 目的으로 함

2. 監查期間

1996年 11月 27日 (水) } 7日間
 1996年 12月 3日 (火) }

3. 監查實施對象機關

委員會選定對象機關	本會議承認對象機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社會產業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社會福祉課 · 家庭福祉課 · 環境保護課 清掃行政課 · 衛生課 · 地域經濟課 ○ 都 市 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地域交通課 · 建設課 · 建築課 · 地籍課 	

4. 監查委員會 編成

別添의 監查班을 編成하지않고 委員會 委員 全員이 監查를 實施한다.

◆ 監查委員

區 分	監查委員	區 分	監查委員	補 助 職 員	備 考
委員長	金 龍 喜	委 員	丁 鍾 撤	專門委員 金 光 泰	
幹 事	金 相 集	"	金 月 出	職 員 安 秉 贊	
委 員	李 吉 道	"	朴 金 子	速 記 士 姜 秀 美	
"	金 東 植	"	金 永 俊		
計	8人			3人	

- 4 -

5. 監查日程 及 場所

日 時	監 查 對 象 部 署	監 查 場 所	備 考
'96.11.27. 10:00 (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社 會 產 業 局 ・ 社 會 福 祉 課 ・ 家 庭 福 祉 課 ・ 環 境 保 護 課 	社會都市委員會 會 議 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人事及幹部紹介 ・ 現況報告
'96.11.28. 10:00 (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社 會 產 業 局 ・ 清 掃 行 政 課 ・ 衛 生 課 ・ 地 域 經 濟 課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出席公務員 ・ 社會產業局長 ・ 都市局長 ・ 社會福祉課長 ・ 家庭福祉課長 ・ 環境保護課長 ・ 清掃行政課長 ・ 衛生課長 ・ 地域經濟課長 ・ 地域交通課長 ・ 建設課長 ・ 建築課長 ・ 地籍課長
'96.11.29. 10:00 (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都 市 局 ・ 地 域 交 通 課 ・ 建 設 課 ・ 建 築 課 ・ 地 籍 課 	"	
'96.11.30. 10:00 (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補充監查資料準備 	"	
'96.12. 1. (日)	< 休 會 >		
'96.12. 2. 10:00 (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年度 區政行政事務監查 實施 ・ 補充監查(該當課) ・ 現場確認(必要時) 	社會都市委員會 會 議 室	
'96.12. 3. 10:00 (火)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 作成 及 委員會 議決 	"	

6. 主要監査實施 內容

室・擔當官・課・所別	主 要 監 査 實 施 內 容	備 考
社 會 福 祉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방안 ○ 사회복지 전문요원 순환 보직과 사기양양 대책 촉구 ○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방법 개선 시정 ○ 서구 장애인 장기자랑 대회에 관한 사항 	
家 庭 福 祉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 사랑의 식당 운영방법과 경로당 설치 운영 개선방향 ○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 “홀로 사는 영세노인 가정 도우미와 함께”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 노인 복지회관 운영 개선대책 	
環 境 保 護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흙먼지 사업장 및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 공해배출업소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 수질오염 순찰 감시에 관한 사항 	
清 掃 行 政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물 사료화 공장 이설 촉구 ○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운영방법과 홍보에 관한 사항 ○ 중고품 교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대행업체의 예산 지원 및 조직관리 운영과 용역 의뢰에 관한 사항 ○ 가로 청소요원에 관한 사항 ○ 대행업체 계약과 자체 감사반을 편성, 확인 점검된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6 -

室・擔當官・課・所別	主 要 監 査 實 施 内 容	備 考
衛 生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허가 및 위생업소 지도단속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단속 운영과 퇴폐·변태 업소에 관한 사항 ○ 식품위생 명예감시원을 전문성있는 전문가로 교체 운영 ○ 식육 미생물검사 및 식육잔류물질 검사 실시 방안 	
地 域 經 濟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화 석유가스 판매업소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에 관한 사항 ○ 지역물가대책위원회 운영방법 시정 ○ 식육 미생물검사 및 식육 잔류물질검사 실시 방안 ○ 축산물 등급화 거래 및 부정 축산물 유통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 W.T.O 경쟁력강화를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판로 계약에 관한 사항 	
地 域 交 通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한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 ○ 이면도로의 활용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 불법 주정차 억제 방안과 홍보 사항에 관한 사항 	
建 設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도 시설물 유지에 관한 사항 ○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 수방단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室·擔當官·課·所別	主要監査實施內容	備考
建設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자 보도블럭 관리에 관한 사항 ○ 고층건물앞 보도블럭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검사 감독권 강화로 부실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建築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 감리자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명예감독관제 실시운영에 관한 사항 ○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의 내실화에 관한 사항 	
地籍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 ○ 개발부담금 부과 및 가산금 행정 소송중인 사항에 관한 사항 	

7. 監査結果是正 및 處理要求事項

該當室課	是正 및 處理要求事項
社會福祉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이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구청은 장애인을 일일고용직등에 채용한 실적이 없으며 또한 관내 일반회사도 장애인 취업에 소극적이므로 이에 대한 취업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 사회복지 전문요원 순환보직과 전문업무만 수행토록 하고 매 3년마다 특수교육과 1년 40시간 사회복지사 전문교육 실시 여부확인, 사회복지요원의 사기양양 대책을 강구할 것 ○ 매년 실시하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방법을 개선하고 목표액과 강제성을 지양하여 자율적인 참여 모금방법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 ○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매년 실시하므로써 많은 예산이 소모되므로 형식적인 예산낭비 보다는 장애인에게 직접적 복지혜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家庭福祉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보육시설 법인 어린이집이 사립 어린이집 보다 많은 보조금과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수탁료 차이점과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은 어떤 특혜를 위한 것인지 시정을 바라며,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사랑의 식당 운영방법 개선과 거동불편 노인의 지원 방안 및 경로당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동일 번지에 경로당 설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該當室課	是正 및 處理 要求 事項
家庭福祉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기준이 국비 70%, 구비 30%로 편성, 타구에 비하여 운영비 지원이 낮으므로 경로당 운영의 현실화 방안으로 운영비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할 것 ○ 홀로 사는 영세노인에게 가정 도우미 결연 추진사업은 좋은 사업이므로 이의 확대방안으로 일상적인 생활문제만 추진하지 말고 실질적인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사업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 노인복지회관인 중앙노인복지회관, 무등노인복지회관 운영은 위탁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이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운영방법의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
環境保護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만 할 것이 아니라 오염물질 배출 행위의 사전 억제방안과 체납액의 일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공사장 비산먼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상무신도심 2지구 공사장에 대량 발생하여 많은 주민의 피해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공해배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 강화는 물론 구청에서 각동사무소와 대형 아파트단지, 학교등에 설치한 소각로에 대한 다이옥신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점검한 결과와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 ○ 하천수질오염 순찰감시를 강화하여 광주천, 영산강 순찰을 확대 실시하고 오염 가중요인의 사전제거와 원인 제공자를 발본색원, 하천수질오염순찰을 강화 감시대책방안 강구할 것

該當室.課	是正 및 處理 要求 事項
<p>清掃行政課</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덕동에 위치한 사료화 공장을 광산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설 조치방안 대책을 강구할 것 ○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한 정책 대안과 분리수거, 재활용수거, 음식물 쓰레기 수거의 효율적인 운영방법과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홍보 대책을 강구할 것 ○ 재활용품 선별창고 준공지연에 따른 대책과 중고품 교환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수집·운반·판매·A/S 등의 확대 추진 방안을 강구할 것 ○ 대행업체의 구예산 지원 및 조직관리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 용역의뢰 결과후 97년 예산에 반영하고 용역업체를 공개 경쟁토록 한다고 하였는데 이의 이행을 촉구할 것 ○ 관내 가로청소요원 49명을 오전 5시에 양동에서 집결하여 청소구역으로 배치하는데 대한 원거리 청소요원의 불편 사향을 해소키 위하여 거주지와 인접지역으로 가로청소 구역을 배치토록 시정 촉구 ○ 96. 12. 30일로 대행업체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은 용역의뢰 결과 보고후 공개모집하고 구청 자체 감사반을 구성 감사실시와 예산집행의 문제점 및 수시확인 점검을 실시, 구예산의 효율적인 집행확인과 폐기물관리에 관한 구조례를 제정하여 재활용 및 쓰레기 수거방안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것

該當室課	是正 및 處理 要求 事項
衛生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허가 및 위생업소 지도단속 공무원의 수시 직무교육 실시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매일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데도 무허가 영업 및 행정 처분을 받은 업소 증가와 퇴폐. 변태업소 주민신고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식품위생 명예감시원이 양호교사, 위생협회 임직원으로 구성되어있어 전문성이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므로 수질 오염과 식품위생에 대한 전문성 있는 수의사 및 영양사등으로 교체토록 시정할 것 ○ 식육 미생물검사 및 식육 잔류물질검사를 식육위생전문가인 축정계 담당 수의사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추진 방안을 강구할 것
地域經濟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의 행정처분을 1년에 동일 회사에 2회이상 처분받는 업체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지도감독 소홀이나 행정처분이 경미하여 발생되지 않았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촉구할 것 ○ 도·농 복합지역으로 재활용 차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여 농촌지역 축산농가에 사료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지역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을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을 매월 또는 격월제로 실시하는

- 12 -

該當室.課	是正 및 處理要求事項
地域經濟課	<p>방안과 물가안정 대책을 위하여 유통체계의 전반을 점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육 미생물 검사 및 식육 잔류물질검사, 식육 위생처리 사항을 위생과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추진 방안을 강구할 것 ○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하여 축산물 등급화 거래 및 부정 축산물 유통 지도단속으로 원산지 표시확인 및 관외 밀반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 ○ W.T.O 경쟁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촌동인 서창, 유덕 지역에서 자체 생산된 농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판로를 계약하여 농업 생산력을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地域交通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주정차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공한지 주차장 매입보다는 관내 어린이 놀이터 부지 이용방안으로 어린이 놀이터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면 60-70대 주차할 수 있어 부지 매입의 비용절감 및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서구 관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물 부설주차장의 이면도로가 총 16,500면이나 등록차량 대수는 42,000대로 주차가능 대수가 36%로 나머지 64%의 차량의 원활한 주정차 활용방안의 대책 수립을 강구할 것

該當室課	是正 및 處理 要求 事項
地域交通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주정차 단속 위주로 실적만 올리지 말고 불법주정차 억제방안의 홍보와 교통 혼잡지역에 집중지도를 강화하고 아울러 서구청입구 불법주정차 사례가 많으므로 지도 단속을 강화할 것
建設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가 총 35만m로서 준설 실적이 53,000m 15%밖에 되지않아 구민의 건강과 여름철 질병 예방차원에서 하수도 시설물 준설을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화정1동, 광천동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화정1동은 총 사업비의 21억원중 11억원을 확보, 광천동은 총 사업비의 26억원중 2억8만원 확보, 이 막대한 예산에 국·시비등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 재해관계법에 의하여 수방단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관내 14개동에 수방단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와 아울러 수방단원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수방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 ○ 맹인용 점자블럭의 관리상 문제점으로 재시공 또는 소파 보수시 맹인용 점자 블럭이 손실 및 훼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유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촉구 ○ 고층건물앞 보도블럭의 손상 이유중 주차 또는 주차장 진입으로 인한 손상이 많아 관계법에 따라 손실자 부담

該當室課	是正 및 處理要求事項
建設課	<p>원칙으로 고층건물 소유자에 대한 손실 보상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업자의 사업시행시 조건부인가 사항인 기부채납공사의 준공검사시 완벽을 기하여 공사감독권 부재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建築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사가 감리한 건물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건축물에 대한 개선방안과 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것 ○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명예감독관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권한 범위를 지적, 계도하여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 철저와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계도하고 96년부터 이행 강제금을 반환치 않는다는 사항을 알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地籍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가 구성되어 있으나 운영실적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개발부담금 41건중 21건만 부과되고 나머지는 부과되지 않은 사유, 개발비용을 계속 추적하여 정확하게 부과토록 하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지가심의에 대하여

該當室課	是正 및 處理 要求 事項
地籍課	<p>토지평가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에 자료를 제출 사전 검토의견을 받도록 시정촉구</p> <p>○ (주)금호 소유인 광천동 터미널에 부과된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증가산금(14회)등이 총 42억7천6백만원이며 서구청 행정심판에 승소하여 행정소송에 계류중인 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납부치않고 있어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통장 및 재산압류등 신속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p>

1995年度 光州廣域市西區 歲入・歲出決算
審 查 報 告 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995年度 光州廣域市西區 歲入 - 歲出決算 審 查 報 告 書

1996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출일자 : 1996년 8월 28일
- 나. 제출자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 다. 회부일자 : 1996년 12월 6일
- 라. 상정일자 : 제61회 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6.12.14)상정,
제안설명,결산지적사항 조치계획보고,
검토보고,질의답변,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 會計課長 鄭 玉 鉉)

○ 결산 총규모

- 세입예산 현액은 691억 6,509만 4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769억 6,358만 9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758억 2,429만 9천원에 대해 599억 3,932만 8천원이 집행되었음.

- 2 -

○ 일반회계 결산

· 세입예산 현액은 607억 3,598만 9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83억 8,577만원으로 112.6%의 실적을 올렸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 지방세 수입 111억 5,856만 4천원
- 세외수입 202억 4,975만 4천원
- 지방교부세 192억 8,729만 9천원
- 보조금 149억 2,984만 4천원
- 지정재원 27억 6,030만 9천원임.

·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73억 9,519만 4천의 79.4%인 534억 8,155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 내역은,

- 의회비가 8억 2,448만 3천원
- 일반행정비가 231억 4,041만 7천원
- 사회복지비가 170억 6,600만 1천원
- 산업경제비가 6억 6,970만 3천원
- 지역개발비가 104억 3,917만 3천원
- 문화 및 체육비가 4억 8,656만 2천원
- 민방위비가 5,783만 5천원
- 지원 및 기타경비가 7억 9,737만 7천원임.

· 95년도 세계잉여금은 170억 2,426만 1천원으로 그 내역은,

- 명사이월비가 21건에 41억 1,837만 3천원
- 사고이월비가 21건에 27억 8,425만 1천원
- 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 8,386만 7천원
- 순세계잉여금이 75억 1,772만 5천원임.

○ 특별회계 결산

· 의료보호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76억 1,538만 1천원의 115.3%인 87억 8,029만 3천원을 수납하였으며,

· 세출은 예산현액 86억 5,547만 7천원의 95.9%인 73억 201만 7천원을 집행하였음.

○ 채권 및 채무 결산

· 94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7억 5,427만 5천원이었으며 95년도에 2억 8,124만 5천원이 감소하여 95년도말 채권현재액은 4억 7,303만원임.

· 94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51억 7,368만 3천원이었으나 95년도에 17억 729만 7천원이 줄어들어 95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34억 6,638만 6천원임.

<별첨 1> **決算檢査結果指摘事項措置計劃報告要旨**
 (보고자 : 회계과장 정 옥 현)

지 적 사 항	추진 계획 및 향후 대책	주관부서
<p>1. 세입결산 검토</p> <p>가. 남구청분구로 95년도에 실제 수납액은 전기대비 0.7%가 하락하고 미수납금액도 전기대비 182,591천원이 증가하였는바 차후 수납을 제고 및 미수납액 회수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 방안</p> <p>나.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 수납 비율이 전기대비 약 10%가 하락되었는바, 수납을 제고에 대한 조속한 방안</p>	<p>○ 지방세 부과시 수납실적 향상을 위해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 납기내 징수를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미수납된 지방세는 강력히 징수 자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p> <p>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체납자의 재산 및 소재 파악에 주력하여 부동산 및 차량 등을 압류하고 앞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봉급, 예금계좌 압류, 형사고발을 통한 채권확보에 전 행정력을 경주 미수납액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자주자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p> <p>○ 징수 독려반(4개반 12명)을 편성 운영하여 '90 ~ '95년도 총미수액 1,171,121천원 중 151,780천원(13%)을 '96. 10월말까지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지방세과</p> <p>지역교통과</p>

지 적 사 항	추진계획 및 향후 대책	주관부서
<p>2. 세출결산 검토</p> <p>○ '95년도 결산시 '94년도와 비교하여 불용액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합리적인 집행방안</p>	<p>○ 지방양여금으로 지원된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따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94년도에서 '95년도로 명시이월한 사업비 5억원을 집행할 수 없어 불용처리하였으며, 또한 지난해 3월 남구 분구로 인하여 사고이월 예산으로 이체 정리하여야 할 월산3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6억 2천만원등 지역개발사업비의 예산 정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p> <p>○ 앞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 원인을 충분히 분석하여 추정 등을 통해 정리하겠으며, 계속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재정전망을 분기별로 분석하고 국·시비보조금, 투자사업등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음.</p>	<p>각 실 과 (기획감사실)</p>

지 적 사 항	추진계획 및 향후 대책	주관부서
<p>3. 계속비 검토</p> <p>○ 공동주택건설 특별회계의 양3동 발산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계속비 규정이 적용되는 예산으로서 익년도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 항목으로 세입예산 금액에 포함시킴으로서 '93년 회계연도부터 누계금액 855,515천원이 과다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의 당해 연도 집행잔액은 계속비로서 익년도로 이월시켜야 하나 '95 회계연도 50,729천원 포함, '92 회계연도부터 누계금액 209,269천원이 불용액 처리되어 있어 전년도 세출결산서상 익년도 이월액 금액과 다음연도 세출결산서상 전년도 이월액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일부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p>	<p>○ 지방재정법 제40조 제3항에 의하여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하나</p> <p>○ 구청에서 계속사업을 처음 시행하였기 업무상 착오가 있었으며</p> <p>○ 계속사업비는 공사완공 연도에 정산조치토록 되어 있으므로 양동 아파트 건설공사가 '96. 6. 30 완공되어 정산조치되었음.</p>	<p>건설과</p>

지 적 사 항	추진계획 및 향후 대책	주관부서
<p>4. 예산편성및예산집행</p> <p>가. 청소년수련관(센터)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연구자문 실시비는 가정복지과(청소년계)의 예산과목으로 집행되어야 하나 타 부서(기획관리-일반수용비)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예산제도의 추지에 어긋난 행위임.</p>	<p>○ 서구 청소년 수련관은 '94년도에 건립계획을 세웠으나 부지를 확보치 못하여 미루어 오던 중</p> <p>○ '95. 11. 28 상무 신도심 5·18 기념공원 내에 부지를 확보하여 '95. 12. 28 신축설계용역을 계약하였음.</p> <p>○ 신축설계에 필요한 건축 및 시설 규모등 과업지시를 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촉박하여 '95. 12. 27일 5·18기념사업 연구단에 청소년 수련관 기능과 운영프로그램 자문을 의뢰한 바, 사전에 예산을 확보치 못해 기획관리 - 일반수용비(지역발전자문위원회 자문수수료)에서 집행하게 되었음.</p>	<p>기획감사실</p>

지 적 사 항	추진 계획 및 향후 대책	주관부서
<p>나. '95 회계연도중 집행부서의 세출 예산이 의회운영비로 4건에 4,035천원이 예산 재배정되었는데 부서간에 예산 재배정은 예산집행을 문란케 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지출이 불가피하게 예상되는 항목은 예산편성시 적절히 반영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은 편성지침에 외거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사항별로 세출 예산을 집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함에도 ○ 의회운영비로 재배정하여 집행한 4,035천원은 예산편성 및 운영이 적법치 못하였음은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사안입니다. ○ 이후 관련 법규를 연찬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음. 	<p>기획감사실</p>
<p>다. 주차장특별회계 기타 교통사업수입중 '95년 결산서상 잡수입외 세입 장수 결정액중 전년도 과태료 미수납액은 797,200천원인 바 '94년도 결산서상 과태료 미수납액은 402,840천원 으로 전년도의 결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금액 394,360천원이 '95년 세입에 추가계상 되었음을 예산편성 및 결산에 신중을 기하지 못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예산편성 및 결산에 있어 세심한 검토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음. 	<p>지역교통과</p>

지 적 사 항	추진계획 및 향후 대책	주관부서
<p>라. 청소사업비 쓰레기 처리 연구 개발비 56,670천원은 '94년도 사고이월된 금액인 바 '95년도에 다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음은 세출결의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짐.</p>	<p>○ '94 ~ '95년까지 위생매립장내 소각로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으로 60,000천원 예산액중 사고이월액 56,670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유는</p> <p>○ '93년도부터 쓰레기매립장을 안정적으로 확보코자 현 남구 송암동 도동계에 위생매립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매립장에 소각로를 설치코자 '94. 9. 24. 금호엔지니어링과 용역계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해 왔으나 '95. 3. 1.자로 남구 분구로 인해 매립장 관련일체 사업을 남구청으로 이관하였음.</p> <p>○ 사업을 인계받은 남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사업비를 이체코자 하였으나, '95. 12월 현재 덕남 정수장등 주변 환경 저해요인으로 중단상태 있다는 통보에 따라 불용처리 되었음.</p>	<p>청소행정과</p>